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³

다. 한편, 한미 FTA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던 것은 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외교통상부였으며, 피고는 2013. 3. 8. 정부조직법 개정 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업무 및 통상교섭과 FTA를 담당하는 부처로 신설되어 기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및 FTA 업무를 이관 받아 이 사건 정보 등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 통상 업무에 있어서 협상 담당자는 협상이 끝나면 당해 협상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만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각 담당자 개인 간에 교환하였던 대부분의 자료는 기록에 남지 않아, 이를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상으로는 검색하기가

³ 한편, 최근 대법원은 한미 FTA 서문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작성된 경위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정보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사건번호 2016두51962).

하지만 위 사건에서는 그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2007년 6월 21일~22일과 같은 달 25일~26일 2회에 걸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에 관한 재협상을 하여 같은 달 30일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하기까지 그 협정문 서문 중 아래 문장(한국인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장)을 추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미합중국 양측이 교환한 문서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로서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특정적인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는 성격을 매우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건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피고로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보공개청구법의 입법목적 및 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각종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검색하여 취합한 후에 공개 가능 여부를 신중히 살펴보았고, 그 검토 결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국가적 이익을 해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라.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피고에게 한미 FTA의 다른 분야 또는 다른 협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게 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피고로서는 한미 FTA 재협상 등 산적하여 있는 피고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광범위한 내용의 해당 문서를 일일이 검색하여 그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의 산업통상 관련 행정업무가 마비될 우려마저 존재합니다.

마. 이에 더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우